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55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이용우·이학영·정혜경

박홍배 · 김태선 · 김성환

한민수 · 임미애 · 박지원

이기헌 · 최민희 · 허성무

김주영 · 정일영 · 황정아

김 윤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 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휴직명령을 하고 보수지급은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민간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여·야 간 합의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2023.12.11.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 결정을 위해 노동계·정부·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른바 '공무원 근면위')를 2024년 6월 12일 발족하였음.

공무원 근면위에서는 근무시간 면제한도 부여 단위에 관하여 ①인사

혁신처장이 49개 부·처·청·위원회의 모든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뿐더러, ②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실제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관장하는 부·처·청·위원회 단위로 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③실제로 민간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 확인 절차를 통해서인사권을 가진 부·처·청·위원회 장관이 사용자가 되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으나, 경사노위 공무원 근면위는 2024년 10월 22일 제11차전원회의를 열고 행정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부·처·청·위원회 단위가 아닌 전체 행정부 단위로 설정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경사노위는 그 이유를 법 제5조제1항에서 행정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단위가 '행정부'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시·군·구별로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설정받게 된 지자체 공무원(정원 381,388명)에게는 최대 1,000,000시간의 면제한도가 부여된 반면, 행정부 공무원(소방공무원 포함)(정원 244,522명)에게는 불과 총합 28,000시간(가중치 포함 시 34,000시간)의 면제한도만이 부여되었음. 이는 총 17명(파트타임으로 분할 사용 시에도 최대 34명)에 불과한 근무시간 면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49개 부·처·청·위원회에서 단 1명도 근무시간 면제자가 없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기관이 생길소지가 다분함.

이에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할 때에는 행정부 전 체 단위가 아니라 부·처·청·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의 노조활동이 법률에 의해 부당하게 위축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법률 제 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를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다만, 행정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 2조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및 감사원을 기준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시간 면제 한도 기준 심의·의결에 대한 적용례) 공무원근무 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 른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지체 없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③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
를 기준으로 조합원(제6조제1항	를 기준으로(다만, 행정부의 경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조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및 감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	<u>사원을 기준으로)</u>
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	
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	
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	
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	
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